

고성군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6
----------	-----

제출년월일 : 2001. 1. 29.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민영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자율화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차요금징수방법 개선 등 군민에 대한 행정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 골자

- 가.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 조항 삭제(안 제3조제3항)
- 나. 민영노외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 자율화(안 제6조)
- 다. 주차장의 설치 관리규정 신설(안 제8조 제4항)
- 라. 주차요금의 환불범위 세부규정 마련(안 제9조 제2항)
- 마.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규정 삭제(안 제13조)
- 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조항 신설(안 제16조의 2)

3. 참고사항

-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일반의 이용”을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제9조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주차요금의 “4배” 를 주차요금의 “2배” 로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포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휴게소,공중변소,간이매점,자동차의장식품판매점,기타필요한 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제2항중 “주차할 수 없을 때” 를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6조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 2.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3.장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 4.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길이 5미터이상 으로 한다.

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2.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 1.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 2.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8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민영주차장”이라함은 군수 이외의 자가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u>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u></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생략> ②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u>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제9조의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u>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1.~3.<생략> 4.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u>4배의 금액을</u>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가산금은 징수수료로서 군세입으로 한다</p> <p>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생략> 1.~4.<생략> ②<u>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③<u>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u> ④<u>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u></p>	<p>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생략> 2.----- ----- ----- ----- <u>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u> ----- -----</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현행과 같음> ②----- ----- <u>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u> ----- ----- ----- ----- 1.~3.<현행과 같음> 4.----- ----- ----- <u>2배</u> ----- -----</p> <p>③<삭 제></p> <p>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②<u>공영노외주차장</u>----- ----- ----- ③<u>공영노외주차장</u>----- ----- ----- ④<u>공영노외주차장</u>----- ----- -----</p>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③<생략> <신설></p>	<p>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포장으로 마무리 하여야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의장식품판매점, 기타필요한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생략>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환불한다.</p>	<p>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 -----주차할수 없을 경우 와 주차장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p>
<p>1. ~2.<생략>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 또는 도로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p>	<p>1.~2. <현행과 같음> 제13조 <삭제></p>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6조의2(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 <u>영 제6조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u></p> <p>1.시설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서 가장 가까운 장소 3.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p> <p>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다음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1.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길이5미터 이상으로 한다.</p> <p>③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p> <p>1.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2.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 하여야한다.</p> <p>④장애인전용표지는 별표8의 기준에 의한다.</p>

[별표 8]

장애인전용표지(제16조2 제4항관련)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28cm × 세로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의 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